

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

재정산은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.

- 2014년 귀속 근로소득(사업·연금)의 세액공제액을 추가·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.12.(화)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.
-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 「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」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
 -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
 - ② 6.1.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
 - ③ 6.10.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하거나,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(6.10. 납부분)으로 환급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회사에서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.10. 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6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.

환급금액은 지난 2월 원천징수를 했던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.

-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제출 받기 전(6.10.)에는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.

따라서,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근로소득 외 타 종합소득이 있거나, 지난 2월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5월말까지 재정산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-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소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(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)이 있는 경우, 금년에는 특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, 재정산 대상 근로자 등이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지난해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난해 말 최종 근무지 또는 주 근무지에서 재정산해야 합니다.

- 재정산은 현(주)근무지에서만 해야 합니다. 만약, 전(종) 근무지에서도 재정산하여 중복환급이 된다면, 향후 가산 세를 포함하여 추징 받게 됩니다.
- 국세청 누리집*에 개정세법 내용, 흠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,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,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 → 성실신고지원 → 원천징수(연말정산)안내 → 연말정산 재정산(2014년 귀속)